



지식경제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정계량단위로 제작·수입된 계량기 및 상품의 사용 준수 협조 요청

1. 귀(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거래의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SI)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사용 토록하고 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제작업체나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제작업체나 수입업체가 법정계량단위로 제작된 계량기나 상품(압력, 온도, 길이 단위 등)을 제작 및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하여도 사용자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계량단위) 및 시행령 제8조(법정계량단위)로 제작된 상품의 사용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귀원(사)의 관련 사업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업체나 수입업체는 고객이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의 납품 요구가 있더라도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모범이 되어 주시길 협조 요청 드립니다. 끝.

지식경제부장관

수신자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영광원자력본부 본부장,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장, 월성원자력본부 본부장,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한국중부발전 대표이사,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한국전력공사 사장, LS산전(청주2공장) 대표이사, 효성 대표이사, 삼성전자 대표이사, 하이닉스 대표이사, 현대오일 대표이사, GS 칼텍스 대표이사, SK에너지 대표이사, S-Oil 대표이사, 대림산업 대표이사, SK건설 대표이사, GS건설 대표이사,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현대건설 대표이사,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한화건설 대표이사, 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태광SCT 대표이사, 협성하이스코 대표이사, 코닉스계기공업 대표이사, 한국나가노 대표이사, 명성효다계기 대표이사, 영진테크 대표이사, 시그마테크 대표이사, 세광계기공업사 대표이사, 드림팩토리 대표이사, 비카코리아 대표이사, 와이즈산전 대표이사, 등 계량기 및 관련상품 제조업체, 사용업체

전결 09/16

연구관 남하욱 과장 김익수

협조자 연구관 임원빈

접수

시행 계량측정제도과-1268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http://www.mke.go.kr>

전화 02-509-7232 전송 02-509-7414 / awook@ats.go.kr / 대국민공개